

商標의 普通名稱化에 관한 考察

—韓國內 TETORON 商標—

〈下〉

孫 海 雲
<辨 理 士>

一承 前一

韓國에 있어서 TETORON 商標의 實態

1. 우리나라에 폴리에스텔系 合成纖維類(纖維, 糸, 織物, 또는 被服等)이 日本으로부터 輸入되기始作한 것은 本調查者の 資料에 依하면 參考資料 第24號에서 確認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959年度頃부터인 것 같다. 그리고 그 輸入品의 大部分은 TETORON商標의 日本 帝人 또는/및 東海이會社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폴리에스텔系 合成纖維가 처음으로 生產되어 出廻된 것은 1967年頃임을 參考資料 第11號中第25面에 依하여 確認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폴리에스텔系 合成纖維가 TETORON이라는 商標名으로 처음 輸入되어 使用된 以後 同國產品이 生產販賣되기까지의 1959年頃부터 1967年頃까지의 사이에서는 그 供給線이 거의 日本 東海이社나 帝人會社것 뿐이므로 그 纖維를 原料로 使用하는 우리나라 製造業者나 그 販賣業者 및 一般需要者들 사이에서는 구태여 使用하기 不便한 폴리에스텔合成纖維等의 名稱代身에 使用하기 便利한 TETORON商標名을 商品名으로 代用한 傾向이 있었음은 事實이었다. 例를 들면 T/C라는 略字는 TETORON/COTTON의 뜻이 없고, T/R라는 略字는 TETORON/RAYON의 뜻이었고, 또 T/W는 TETORON/WOOL乃至 TERYLENE/WOOL의 뜻으

로 適用되어 왔다. 그러나 1967年頃부터 國產 폴리에스텔系 合成纖維가 점차 生產販賣됨에 따라서 上記 日製 兩社의 輸入商品과 國產品을 區別하지 않으면 안될 段階에 到達하게 되었으며 本調查者가 工業振興廳化纖檢查課長勤務時(1973年度)에는 T/C, T/R, T/W 等 上記한 表示를 一般統一表記인 폴리에스텔로 訂正統一하라는 指示를 받아 1973年 以後부터는 P/C, P/R, P/W等으로 그 表示를 統一하기로 하였는바, 여기서 P는 POLYESTER의 略字인 것이다. 同時에 우리나라의 各 폴리에스텔系 合成纖維의 메이커들도 各者 自己自身의 獨特한 商標를 만들어 他社商品과 識別to록 하였는바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鮮京合纖株式會社의 경우

- ㄱ. 鮮京폴리에스텔
- ㄴ. SKY 또는 SKYRON

(參考資料 第25號 및 參考資料 第11號 第191面参照)

(2) 株式會社 코오롱의 경우

- ㄱ. KOLON
- ㄴ. KOLON POLYESTER—코오롱폴리에스텔

(參考資料 第26號 및 參考資料 第11號 第194面参照)

(3) 東洋폴리에스터株式會社의 경우

- ㄱ. TOPLON 폴리에스터
- ㄴ. 東洋폴리에스터

(參考資料 第27號 및 參考資料 第11號 第195面

(参照)

(4) 株式會社 三養社의 경우

①. TRIRON

②. 三養폴리에스터

(參考資料 第28號 및 參考資料 第11號 第193面
参照)

(5) 大韓化纖株式會社의 경우

①. DAPOLENE

②. ACELAN

(參考資料 第29號 및 參考資料 第11號 第190面
参照)

(6) 第一合纖株式會社의 경우

①. ESLON

②. ESLON POLYESTER

(參考資料 第30號 및 參考資料 第11號 第11號
第196面 參照)

(7) 第一化纖株式會社의 경우

①. OPLENE

(參考資料 第11號 第197面 參照)

2. 그리고 우리나라 폴리에스系 合成纖維에 이
커들은 同纖維 및 그 纖維製品에 對하여서는 各
자의 登錄商標를 使用하지 TETORON이라는 名
稱은 使用하지 않음을 參考資料 第7號의 韓國化
纖協會事實確認書에 依하여 確認할 수가 있고,
또一般的으로 現在 우리나라 纖維工業界에서는
폴리에스텔系 合成纖維나 그 製品에 對하여 그
것이 日本 帝人會社나 東萊이會社에서 供給된
것이 아니면(参考資料 第24號의 資料에 依하면
1981年 現在까지로 TETORON商標名의 商品이
繼續하여 우리나라에 一部輸入되고 있음을 確
認할 수 있을 것임) TETORON이라 表示하거나
그렇게 呼稱하지 않고 있다는 事實을 參考資料
第31號 乃至 參考資料 第32號等 資料에 依하여
서도 確認할 수 있을 것이다.

3. 또 우리나라에 輸入되는 商品中 TETORON이라는 商標는 폴리에스텔系 合成纖維나 그
製品(前記 帝人이나 東萊이會社製品) 以外에도
폴리에스텔필름이 TETORON FILM라는 名稱
으로서 多量 輸入되어 널리 알려지고 있어 TE
TORON이라 하면 곧 폴리에스텔系 合成纖維만
을 聯想케 한다고 볼 수도 없게 되어 있는 것도
事實이라 思料된다.

4. 우리나라에 現在까지 比較的 알려져 있는

폴리에스텔系 合成纖維로서 登錄되어 있는 外國
商標는 前記한 C項6에서 例示한 美國의 DACRON,
英國의 TERYLENE, 日本의 TETORON,
伊太別의 TERITAL, 獨逸의 PERLON 및 TRE
VIRA 等이 있으며 이 中에서도 特히 DACRON,
TERYLENE 및 TETORON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5. 그리고 우리나라 需要者나 去來者層에서
上記 日本兩社가 供給한 原料(纖維 또는 絲類)
또는 그 製品을 指稱할 때에는 테토론纖維(TETORON FIBER), 테토론織物(TETORON FABRICS), 테토론シャツ(TETORON SHIRTS)等이
라 하고 있으며 이를 單純히 TETORON이라 하
지는 않는다. 만약 TETORON이라고만 略稱한
다면 그 商品이 纖維類(纖維, 絲類, 布他類, 被
服類)中 具體的으로 무엇을 指稱하는지 또는 심
지어는 TETORON-FILM을 指稱하는지 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며, 한편 어떤 商標가 指定商品
名과 함께 結合된 경우에는 이러한 結合語도 一
種의 聯合商標로 認定하고 그 登錄이 許與되고
있는 것이 現實情인 것이다. 따라서 上記와 같
이 TETORON이 纖維, 絲, 織物, シャツ, フィルム等
普通名稱과 함께 結合되어 商品名乃至 結合商
標로 使用되었다고 하여 TETORON을 分離시켜
이 部分이 普通名稱화되었다고 보는 것은 無理
이며 不當하다고 思料된다.

韓國內 TETORON 商標의 普通名稱化 與否

以上의 資料들을 綜合判斷하여 볼때 우리나라
에 있어서 TETORON이라는 商標는 다음과 같은
理由로 그 指定商品의 普通名稱으로서 普通
으로 使用하는 方法으로 表示한 標章만으로 된
商標라고 볼 수 없다고 思料된다.

1. 一部 韓與이나 其他 刊行物 等에 TETORON이
폴리에스텔系 合成纖維의 商品名乃至
商品名인 것처럼 記載되어 있다 할지라도,

(1) 그 刊行物이 日本에서 發行된 것인 경우,
1978年度에 同商標의 更新登錄이 日本特許廳에
依하여 許與된 事實로 미루어 보아 그러한 記載
事項이 日本特許廳에서 조차 採擇되지 않고 있는
以上, 우리나라의 경우 더더구나 그대로 適

用되거나 認定될 수 없을 것이며

(2) 그 刊行物이 우리나라에서 發行된 것인 경우,

그 刊行物이 發行된當時의 與件과 現時點에 있어서의 與件을勘案할 때 果然 現時點에서도 그 刊行物 發行當時와 同一하게 判斷할 수 있을 것인가가 考慮되어야 할 것인바, 例컨대 1970年 度에 우리나라 同志社가 發行한 商品大百科辭典의 경우 前述한 바와 같이(C項 5—(1) 參照), 그것이 事實上 日本商品大辭典의 版域에 불과하면서도 日本辭典에는 商標名으로 되어 있는 것을 商品名이라고 記載하였거나, 앞에서는 商標名을 紹介한다고 說明하고 註記에서는 商品名이라고 記載하는 等의 矛盾以外에도, 그 刊行物이 發行된當時(內容的으로는 1969年當時)의 與件과는 現時點에 있어서의 與件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顯著한 差異乃至 變化가 있으므로 그當時의 與件上에 商品名이라 記載된內容을 現時點에서 그대로 適用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1. 1969年 度現在로서 우리나라에서 폴리에스텔系 合成纖維를 生產하게 된 것은 겨우 2次年 度에 不過하며 年間 總生產量(纖維 및 絲)도 3,532%로서 (參考資料 第11號中 第24—25面 參照) 日本東萊이會社가 當年度에 韓國에 輸出한 實績 1,703%의 約 2倍에 不過함을 알 수 있을 것인바, 따라서 이 當時만 하여도 國產開始初期(2次年 度)에 不過하여 그 以前까지 約 10年間 거의 獨占的으로 輸入되어 오던 TETORON商標의 商品에 對하여 一般이 지니고 있던 깊은 認識度가 尚存하고 있었음을 能히 推定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當時의 與件에 그 刊行物이 發行되었다면 TETORON을 商標名이 아닌 商品名으로 誤認할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2. 그러나 1979年 度를 基準잡아도 國產폴리에스텔系 纖維(絲包含)의 年間生產實績은 230, 579%인데 比하여 同輸入實績은 21, 367%에 不過하고(參考資料 第11號 第23—25面 및 第44—45面 參照), 輸入品中 日本 東萊이 會社와 帝人會社兩社分은 238%(0.1%)에 不過함을 알 수 있다. (參考資料 第24號 參照) 다시 말하자면 1979年 度當時에는 우리나라 폴리에스텔系 合成纖維類(纖維와 絲)의 總需要量(生產實績+輸入實績)

이 255, 946%으로서 그 中 國內生產이 總 91%에 達하는 데 比하여 TETORON의 輸入實績은 約 0.1% 程度에 不過한 바, 國內生產品은 各己各 메이커別로 參考資料 第25號—第30號와 같은 獨占的인 商標를 使用하고 있으며 그 어느 國產品에도 TETORON이라는 名稱이 使用되지 않고 있음을 參考資料 第7號의 韓國化纖協會의 事實確認書나 其他 參考資料 第32號의 業界事實確認書等에 의하여 確認할 수가 있다. (參考資料 第2號中 셀로태이프 判例에서는 이러한 點이 參酌되고 있다) 그리고 其他 그 指定商品의 去來者나 需要者의 大多數가 아직도 TETORON商標를 日本帝人이나 東萊이 會社에서 供給한 것 以外의 商品에 對하여 商品名乃至 商品名(普通名稱)처럼 使用하고 있다는 具體的인 證據를 發見할 수 없고 오히려前述한 바와 같이 從來 잘 表示使用되어 왔던 T/C, T/R, T/W等의 名稱이 1973年 度부터는 P/C, P/R, P/W等으로 訂正하여 業界에 對한 行政指導까지 行하여져 온 事實들을 綜合判斷하여 볼 때 參考資料 第10號와 같이 約10餘年前에 發行된 刊行物(辭典等)의 記載內容을 現時點에 그대로 適用시킬 수는 없다고 思料되는 바이다.

2. 其他 TETORON商標에 對하여서는 그것이 登錄商標로서 商品名(普通名稱)이 아니므로 商標權侵害行爲가 없도록 一般에게 警告하고 있는 實績을 參考資料 第24號의 JTN雜誌나 參考資料 第23號의 最近 朝鮮日報의 廣告欄에서 發見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商標權者의 商標管理의 努力を 商標更新登錄의 時點에서 參酌되어야 할 것임은 參考資料 第2號中 셀로태이프에 關한 判例精神으로 보아 마땅하다고 思料된다.

3. 其他 上述한 바와 같이 TETORON은 폴리에스텔系 合成纖維나 그 纖維製品에 使用되고 있는 有名商標일 뿐 아니라 其他 폴리에스텔필름等 他商品分野에 있어서도 널리 使用되고 著名化되고 있다는 事實로 미루어 보아 TETORON을 纖維類에 對한 普通名稱으로 斷定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參考資料 第2號中 PERLON이나 SINGER에 關한 判例精神에 立脚하여 볼 때 當然하다고 思料된다.

(祝)

會員企業創立紀念

◆ 9月中 ◆

(日字順)

◎……本會는 誌上을 빌어 다음 會員企業의 創立紀念日을 慶賀합니다……◎

서울味元(株)	(代表:林哲洙)	24周年	(9. 1)
西珍產業(株)	(所長:劉南鎮)	9周年	(9. 1)
三陽타이어工業(株)	(代表:朴定求)	22周年	(9. 5)
太平洋化學工業(株)	(代表:徐成煥)	37周年	(9. 5)
大韓豐產業社	(代表:金健植)	2周年	(9. 7)
韓國電子(株)	(代表:鄭世能)	13周年	(9. 9)
三宇一化學工業(株)	(代表:朴鶴善)	22周年	(9. 15)
第一毛織(株)	(代表:金孝信)	13周年	(9. 15)
(株)漢陽工營	(會長:李洙彬)	28周年	(9. 15)
同和藥品工業(株)	(代表:安承在)	6周年	(9. 24)
南相善特許事務所	(代表:南相善)	85周年	(9. 25)
韓國스레트工業(株)	(代表:李秀春)	29周年	(9. 26)
東一 고무 벨트(株)	(代表:金裕根)	11周年	(9. 28)
		37周年	(9. 30)

-40面에서 계속-

또 TETORON이 그指定商品分野에서 國產業者의 大量은 商標들과 區分되어 使用되고 있다는事實은 그것이 普通名稱化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判斷에 參酌되어야 할 것인 바, 이것은 參考資料 第3號의 “味の素”商標에 對한 解說(前記한 C項 7 參照)로 미루어 보아도 當然하다고 思料되는 바이다.

4. 參考的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最近 5年間(1975年~1979年)의 폴리에스텔系 合成纖維類(纖維와 絲類)의 全體需要量(國內生產量+輸入實績)에 對한 TETORON商標名의 폴리에스텔系 合成纖維類(纖維와 絲類)의 輸入實績을 對比하

면 다음과 같다. (이 資料는 TETORON商標가 最近 數年間 점차 우리나라에서 그 使用傾向이 크게 減退됨으로써 過去처럼 去來者나 消費者들에게 깊이 認識되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國產品에 對하여서까지 TETORON이라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推定하는데 있어서 參考價值가 있을 것 으로 思料된다.)

1969年度의 國內生產量 3,532%對 TETORON商標名輸入量 1,703%의 比는 約 2:1인데 比하여 1979年度의 國內生產量 320,579%對 TETORON商標名輸入量 238%의 比는 約 970:1로 크게 差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1969年度에 TETORON商標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던比重이 1979年度에는 約 500分의 1로 衰退되었는 反面 國產品의 商標가 TETORON商標에 比하여 約 500倍 더 널리 더 많이 使用되고 있다는事實을 暗示해 주고 있는 바, 이러한 事實만으로도 參考資料 第14號의 記載內容이 現時點에서 그대로 適用될 수 없을 것임을 確認할 수 있다고 思料된다. <完>

年 度	總需要量(%)	泰托龍商標名輸入量(%)
1975	116,480	2,095(1.8%)
1976	138,113	595(0.4%)
1977	165,004	596(0.4%)
1978	227,335	3,411(1.5%)
1979	251,946	238(0.1%)
(平 均)	(179,776)	(1,387)(0.8%)